

## 장소적으로 분리된 단위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선임여부

- 우리 회사의 사업(전기, 가스도매, 부동산) 특성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관련 “별표5”의 사업에 해당됨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 따라서 본사, 지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수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하여야 함.
  - 다만, 귀사의 소속 사업장 규모가 보건관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50인미만의 경우에는 직근상위의 사업장에서 소속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보건 관리 층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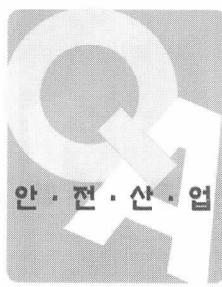
## 산업의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의 자격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별표14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란 전문의가 아닌 전 의사를 뜻하는 것인지

  - 전문의 중 방사선, 임상병리, 해부병리, 가정의학, 재활의학 등 기타 전문의도 포함되는지 여부
  - 산재병원 근무경험이 있는 자 혹은 보건협회에서 인정하는 산업보건의도 포함되는지 여부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의사”는 의료법에 의한 모든 의사 를 포함하지만, 예방의학전문의를 제외한 기타 전문의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의 원인·예방 또는 치료를 담당한 사실이 있거나, 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22조의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장제작과 현장시공을 총괄 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전체 도급공사내역이 공장제작분  
인 P·C생산 및 운반과 현장시공  
분인 P·C조립 및 마감으로 구성  
되어 있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공사금  
액을 공장제작분을 제외한 현장시공분야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동법시행  
령 제12조 및 별표 3의 안전관리  
자 선임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  
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고 있는  
바,

- 귀 현장에서와 같이 공사의 특성상 P·C생산  
및 조립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경우  
라 하더라도 P·C생산은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기 위한 물품을 생산하는 것이며 이는 결  
국,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귀 현장의 공사금액은 공장분과 현장분  
을 합한 금액으로 보아야 함.

※공사금액에는 VAT가 포함됨.

## 검사가 완료된 프레스를 단순히 이전 · 설치 하는 경우 완성검사 실시 여부

본인의 회사가 기존 프레스 운영업  
체로 부터 프레스를 매입하는 경우

또는 양도받아 설치한 경우 완성검사에 해당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제  
3항 및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규정 제10조의 규정  
에 의해 설치 장소에서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경우  
가 아닌 정기검사가 완료된 프레스를 단순히 이  
전·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간접가열시설의 댐퍼가 방호장치인지 여부

화학공장 간접가열시설(열매가열로)  
의 스택(stack) 중간에 설치한  
비상용 댐퍼(damper)가 산업안  
전보건법 제33조(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장  
치 등)의 적용을 받아 방호장치로 인정할 수 있  
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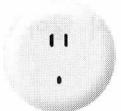


화학공장 간접가열시설(열매가열로)  
의 비상용 댐퍼(by pass damper)  
는 전기집진기가 고장났을 때 사용  
될 수 있는 댐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  
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방호장치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공  
정상 댐퍼 (by pass damper)가 가열로 내부압력  
과 자동으로 연동되어 내부압력 상승과 함께 댐퍼  
가 열렸을 때 열매가열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화재·폭발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로 볼 수 있음.

도급사업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방법과 시기는

## 도급사업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 계상방법과 시기는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4호)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율을 적용 계산하여야 하는 바.

-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를 일괄발주 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용을 적용해야 하고, 공사를 분리발주 하였다면 각각의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할 것임.
  - 안전관리비의 계상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시이므로 계상시 낙찰율 적용은 불가함.

- ※ 귀 질의에서와 같이 주된 공사는 일반건설(갑)이고 지급자재비를 포함시킨 안전관리비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경우의 안전관리비 산정방법

▶ 법정안전관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 × 1.88% × 1.2배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중에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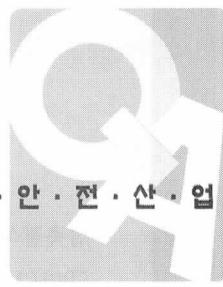
(1)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중에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예를 들어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인 낙하물 방지망(건설품셈 2-8)을 별도로 설계에 반영을 할 경우 안전관리비에 기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계산이 아닌지

(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2” 항목중에 있는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의미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9-11호, '99.6.3)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바.

- 동 고시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은 안전관리비를 사용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종류 및 현장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그 표준을 정하였다 할 것임

- 따라서 낙하물방지망이 건설공사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항목은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



으로므로 중복계산이 아님

(2) 동 고시 “별표 2”의 안전시설비 항목에서 공사설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라는 2가지 단서조항을 붙인 이유는

- 건설공사표준품셈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공사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 99-11호) 별표2의 사용내역 중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에 누락된 사항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수 탈수로 인한 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서울지하철 5호선 5-○ 공구 건설공사 시공중 주변지하수 탈수로 인하여 주위건물중 일부분에 균열

이 발생하여

-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거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91. 11. 14) 및 대한건축협회 서울지부('92. 2. 21)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있음.
- 안전진단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수 탈수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정되어 위 안전진단비용을 당사에서 지출한 바 있으며
- 위와 같이 공사장 주변 건물을 공인된 타기관에 안전진단 의뢰하여 보수한 경우로서 피해에 대한 귀책 소재가 시공자에 있지 아니한 경우

### 〈갑설〉

안전진단 비용을 노동부고시에 명시된 사업자의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하여야 함.

### 〈을설〉

사업장에 인접한 건물은 사업장의 직접적인 안전과 무관함으로 표준안전관리비 중 기본계상 비용이 아닌 별도계상 비용으로 취급해야 함.

### 〈병설〉

건설안전 진단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와 전혀 무관하게 별도처리 하여야 함.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 건설공사 시공중 주변 지하수 탈수로 인하여 현장주위 건물의 일부분에 균열이 발생한데 따른 민원야기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의 비용은 건설공사 자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써
- 당해 현장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